

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21. 12. 2.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박종길 의원 등 5명(배지훈, 김귀화, 서민우, 이신자)
- 발의일자: 2021. 11. 19.
- 회부일자: 2021. 11. 19.
- 상정 및 의결: 제284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. 12. 2.)

2. 개정이유

- 공공갈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갈등관리심의 위원회의 구성·운영과 위원의 회피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등,
-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여 달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해결 능력을 향상 시킴으로써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갈등영향분석의 정의를 신설함(안 제2조)
-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원의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9조)
- 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화하고자 각 기능에 관한 조문을 인용함(안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및 현행조례
 - 「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」 제3조 및 제10조~제12조
 -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」
- 비용추계서: 비대상
- 입법예고(2021. 11. 19. ~ 11. 29.)결과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공정책 및 갈등영향 분석의 정의, 공공정책의 적용범위 및 공공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에 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였으며,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조문을 인용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여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

- 안 제9조제1항 일부 및 제6항~제8항의 위원의 위·해촉, 회피 등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서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문의 중복방지 및 간소화를 위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함.

7. 심사결과: 수정가결

8. 첨부서류: 위원회 수정안

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대구광역시 달서구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”를 “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<수정조문 대비표>

| 현 행 | 개 정 안 | 수 정 안 |
|--|--|---|
| 제9조(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| 제9조(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| 제9조(위원회의 구성 · 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. |
| ② (생 략) | ② (현행과 같음) | ② (현행과 같음) |

③ 구청장은 구 소속 관련 공무원 또는 같은 등의 예방과 해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④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 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두

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정책 소관 국장, 소관 부서장, 총무과장으로 한다. 다만, 구청장이 의안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안을 심의하고자 할 때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, 구의회 의원, 학계나 시민단체 대표 등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, 그 회의가 폐회함으로써 해촉된다. 다만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⑤ 위촉위원에 대한 위·해촉 등 관리업

③ (개정안과 같음)

④ (개정안과 같음)

⑤ (개정안과 같음)

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무는 의안별 소관부서에서 담당한다.

⑥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.

⑦ 구청장은 위원이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
⑧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자문, 심의, 의결 등에는 참여할 수 없다. 이 경우 해당위

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<삭 제>

<삭 제>

원은 스스로 안전의
심의·의결에서 회피
하여야 한다.

⑥ 위원회의 사무를
처리하기 위하여 간
사 1명을 두며, 간사
는 갈등관리 업무를
담당하는 부서의 장
으로 한다.

⑨ -----

-- 의안별 소관부서
의 업무담당주사로
한다.

<삭 제>